농업재해대책비(지자체)

세부사업명	재해대책비				세	목	자치단체 자본보조
내역사업명	농업재해대책비		예 (백민	_	30,000		
사업목적	○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저수지 및 농수로 등 농업분야 공공시설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복구비를 지원하여, 피해 농가의 영농재개 및 경영안정 도모						
사업 주요내용	○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저수지 및 농수로 등 농업분야 공공시설 피해 발생 시 복구비의 일부를 해당 지자체에 지원						
국고보조 근거법령	○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제4조 ○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66조						
지원자격 및 요건	○ 지원대상 :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분야 공공시설에 피해를 입은 지자체 ○ 지원조건 : (국가관리시설) 국비 100%, (지방관리시설) 국비 50, 지방비 50, (농어촌공사관리시설) 국비 70, 지방비 30						
지원한도	○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등에 따라 복구계획 수립						
재원구성(%)	국고 50~ 100%	지방비	30~ 50%	융자	-	자부담	-
연도별 재정투입 계획	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, 신속히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원						
담당기관		담당과		담당자		연락처	
농림축산식품부		재해보험정책과		강승규 안준영		044-201-1794 044-201-1795	
신청시기	-			사업시행기관 지방자치단체		자치단체	
관련자료	-						